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221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11. 7.)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 1. 제안이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리안정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 신설(안 제15조제4항)

나.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 별표4)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대상을 재직기간 2년미만에서 5년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

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안 제24조 제2항제3호, 안 제24조제9항, 안 제24조제12항)

-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수정
- 재해구호휴가 사유 및 대상 명확화
-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추가 신설

라.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4조제15항)

마.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바. 기타 운영상 보완사항 수정

- 법령 폐지 등으로 인한 현행 법률 조항 수정(안 제20조의3, 안 제23조제11호, 안 제24조제8항)
-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예 따라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안 제24조제2항제2호, 안 제24조제7항)
- 검직허가 절차 관련 단서 조항 삭제(안 제28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시행 2023. 10. 19., 2023. 7. 18.,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확대와 법령 폐지 등으로 인해 인용 법률 조항 현행화 등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5조제4항 신설은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4조제4항<sup>1)</sup>이 신설(2023. 6. 13.)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안 제18조는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대상을 재직기간 2년미만에서 5년미만까지 확대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안 별표4)로 확대하는 것임
- 제20조의3 :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 →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

1)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변경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2019. 6. 18.)되면서 종전 제3조의4가 제3조의5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안 제20조의4(연가의 저축)은 안 제15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새로 반영한 것임.

- 안 제24조는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2항제2호 : “만 40세” → “40세”

제7항 : “만 5세” → “5세”로 변경한 것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한 것임.

· 제2항제3호 : “사산” → “사산 또는 조산”으로 범위 확대

· 제8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p>2)</sup> 제9조제1항에 따라”로 변경한 것은 2021년 1월 12일 설치령이 법으로 제정(시행 2021. 7. 13.)되어

##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88호, 2021. 1. 12., 제정]

### ◇ 제정이유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의 역량을 함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현재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운영에 있어 특수성을 갖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를 반영한 것임.

- 제9항 :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sup>3)</sup>로 변경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을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자녀로 확대함.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14조제1항<sup>4)</sup>에 따른 대규모 재난은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4)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해구호휴가 사유 및 대상을 명확히 함.

- 제12항 : 5년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도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
- 제15항 심리안정휴가 신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sup>5)</sup>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 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 12. 7.]

5)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2022. 1. 11.>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경우와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 가능

- 안 제28조제1항 : 겸직허가 절차 관련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행정기관에서 소속된 7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의 단서 조항 삭제
- 안 별표3 :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리안정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기준 정비,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